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700호 2020. 12. 3.(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38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 1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459호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사천시 고시 제 2020-38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2. 3.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0-11호 (2020. 07. 22.)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PE 부잔교 설치 및 연결도교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늑도동 195-6번지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20. 11. 26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사천시 공고 제2020-1459호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의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 및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 다. 녹지활용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라. 도시공원 부지사용 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 마.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
- 바.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 사. 도시공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15,

FAX : 831-6038)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4.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녹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5.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의 일정구역을 녹화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인 의사나 합의를 바탕으로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7. “단일토지”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 “조경시설”이란 생활 주변의 경관 향상과 주민의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
 - 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
 - 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 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인공적인 시설물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용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 등
2.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도시녹화계획
3. 법 제12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에 대하여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4. 법 제12조의2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도시공원 부지활용계약
5.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이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체결하는 녹화계약
6. 법 제41조에 따라 공원·녹지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7.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운영

제2장 도시녹화계획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는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하고, 녹지 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서로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공장 및 산업단지
 6.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7. 교육시설지역
 8.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9.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따라 추진한다.
-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정비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 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 면적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 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 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 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 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 과제를 도출한다.

4. 도출된 녹화 과제를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 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의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부담을 명확히 하여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 활동)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시장은 녹화운동에 시민참여와 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 적정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연계 및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은 “시민과 함께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등 생활에 밀접한 운동을 시작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⑤ 시장은 시민에게 녹화의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소책자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경연 대회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보도 의뢰
5. 도시녹화, 정원가꾸기, 조경수목의 관리 등 시민 교육의 운영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6. 녹화모범사례 경연 대회 및 시상
7. 녹화캠페인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12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의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소유자와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는 시장은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제15조(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의 소유자에게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제16조(유지관리)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당 토지 안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제18조(부지사용계약의 대상부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의 대상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제19조(계약기간) ①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1회로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20조(계약내용)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을 말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부지사용료 및 그 사용료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공원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수목의 식재, 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 나. 토사붕괴, 사방시설, 수목보호 등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 다. 기존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라.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마.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조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부지에 대하여 규모, 수림 상태, 접근성,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부지사용계약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용지도와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2항의 토지조서를 기초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22조(공고) 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지사용계약의 명칭
2. 부지사용계약의 목적
3. 부지사용계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계약기간

제23조(부지사용료)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제21조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1.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초화류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나 관목 등으로 경미한 식재 또는 슈아베기 등 숲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2. 재해방지,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공원시설에 설치하는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운동기구 등 각종 편의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환경 훼손이 적고, 철거·이전·복구가 쉽도록 설치

4. 부지사용계약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25조(부지사용료의 지급) 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계약 후 1년 단위로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고, 시장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그 부지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변경 등) ① 부지사용계약의 당사자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상호 합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② 시장과 토지소유자는 부지사용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의 갱신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 위반 시의 조치사항)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5장 녹화계약

제28조(녹화계약의 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 블록, 단지 등을 말한다)의 토지가 있는 지역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등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를 포함한다),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발행위로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안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29조(녹화계약의 내용) 녹화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고려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를 말한다)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 안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안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를 포함할 수 있다.

2) 녹화계약지역 안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에 포함할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 부분(담장을 포함한다)을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 부분에 식재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해충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안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5. 녹화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시장은 도시녹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묘종의 무료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 설계 등

라.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 대여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 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 상담

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담장없애기, 녹색주차사업, 꽃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2)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녹화계약 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는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을 경계로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등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 등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주민협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회를 둔다.

② 주민협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하되, 녹화계약 체결 등을 위해 대표자를 선임한다.

제31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별표 3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2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시장은 제31조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재 또는 공고된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33조(계약체결) 시장은 제3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한 후 주민협의회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34조(계약체결사항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사천소식지에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35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토지소유자 등이 제33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서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6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계약위반 시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토지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제3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6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제39조(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입장 거부 및 퇴장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41조(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공원 내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제42조(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지원 행사, 거리예술 활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제43조(원상복구 등) ①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 또는 도시공원·녹지를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
자등”이라 한다)가 각종 시설 및 식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게 한 경우에
는 이를 원상복구하고, 시장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등의 부담으
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
용자등에게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식물 훼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4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등이 공원을 사용하는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 또는 식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 및 제38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허가자”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허가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제45조(점용료의 납부) 허가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공원 및 녹지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제47조(점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의 단축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 점용허가 취소 또는 기간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48조(사용허가)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원·녹지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인 경우의 허가 대상자 선정은 시민을 우선으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③ 시장은 공원·녹지의 사용허가 시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공원·녹지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 관례조례」에 따른다.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제5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공원녹지 관련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공원녹지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과장, 녹지공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의원

나. 공원, 녹지, 도시계획, 산림 등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다.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원녹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7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징수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별표 1]

공공공의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8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목표

- 1) 녹화의 목표는 양적인 목표와 질적인 목표를 구분 설정한다. 특히, 질적 목표는 공공시설의 녹화가 도시녹화, 지역녹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 2) 현황과 비교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도록 한다.
- 3) 녹화계획을 구체적이며 알기 쉽도록 도면이나 스케치를 작성한다.

나. 조성기준

- 1) 녹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기법으로서 각 공공시설별로 내용, 사업별 목표량, 사업주체, 사업시기 등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특히, 지속성이 필요한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의 녹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2. 공공시설의 유형별 녹화기준

가. 관공서 녹화

- 1) 대상시설로는 시청사,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시민센터, 주민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 2) 시청 등 큰 규모의 관공서는 가능한 경우 울타리를 없애고 교목과 관목(생울타리, 화단 등을 말한다)을 식재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 3) 주민자치센터(동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와 같은 작은 규모의 관공서는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작은 분수와 녹음수, 파라솔 등과 같은 시설을 도입한 소규모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지자체 관공서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해소하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 4) 지자체의 관공서 중 노후 담장을 우선적으로 녹화하고, 가시권이 불량한 지역이나 녹지가 부족한 지역 내 관공서를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 5) 또한, 지역 내 관공서 중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시행하도록 한다.
- 6)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책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관공서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나. 교육 및 의료시설 녹화

- 1) 학교, 병원, 보건소 등은 각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일괄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전반적인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한다.
- 2)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녹지 수준이 비교적 낮은 학교, 병원 등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 및 의료시설의 녹화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3) 학교 및 병원시설에 담장녹화, 생울타리 또는 시설녹지 개념의 녹지대 조성, 담장 철거, 투시형 펜스 설치 등으로 공공시설의 개방감을 연출하고 인접한 보행로와 공간적 연계성을 고려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가시 가능한 도시녹화공간을 확보한다.
- 4) 학교와 병원시설 주변에 가급적 담장설치를 억제하여 공공성과 개방성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외곽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녹지대 및 투시형 펜스를 시설하여 시각적으로 개방된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한다. 다만, 수목으로 조성할 경우, 교목을 열식하고 하목으로 생울타리를 조성하며, 생태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수종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다. 역사주변 녹화

- 1) 역사는 출입구 위치와 인접 교차로 현황 등에 따라 다양한 녹화가 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의 체계적인 현황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 2) 역사녹화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용률이 높은 환승역사 주변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역사주변에 식재 가능한 소규모 공지는 유형별로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녹지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 3) 역사 진출입 부근은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역사 주변 건축물의 이용동선과 마찰이 없도록 주변 건축물의 용도 및 기능과 연계시켜 녹지로 조성하고 휴식과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 및 현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조성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라. 철로변 녹화

- 1) 철로변을 녹화하여 운행시에 보여지는 주변의 불량한 경관을 차폐하여 여행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한다.
- 2) 철로변의 녹화사업은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방음·방진·차폐식재 등을 위주로 시행하며, 철로변의 부지는 대부분 협소하므로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녹화계획을 수립한다.
- 3) 철도변의 녹화는 차폐식재와 방음식재를 주로 실시하고, 차폐식재는 철도 승차시에 가시되는 시선방향으로 상록교목을 식재하며, 방음식재는 수목의 폭원이 확보되어야 소음감소 효과가 있으므로 가급적 철도변 가까운 곳에 상록교목을 군식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마. 주차장 녹화

- 1) 주차장 녹화사업을 통해 녹지면적을 증가시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 2) 주변의 이질적 경관 및 소음과 같은 환경악화 요소를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 3) 공용주차장의 경우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넓은 오픈스페이스를 갖고 있으므로, 가로와 접한 일정 부분을 건축선 후퇴를 유도하여 확보되는 가용지를 가로수 및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
- 4) 장기적으로 일반 주차빌딩과 연계된 환승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존 지상 주차장의 가용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 안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 5) 주차장내 포장재료는 아스팔트 대신 잔디와 화강석 또는 벽돌을 혼용하는 투수형 잔디 블럭과 같은 특수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바.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 1) 도시구조물의 유형별 녹화공법 등 종합적인 녹화계획을 수립하여 구조물 벽면의 차폐 및 장식, 오염 또는 비바람에 의한 외벽 침식 및 풍화방지, 벽면 온도의 상승억제에 따른 열부하 감소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을 추진한다.
- 2) 육교와 방음벽과 같은 도시의 주요 구조물은 가로 구조물 벽면에 식물을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
- 3) 가로변의 절개지와 옹벽, 석축, 교량의 교각 등 도시구조물의 벽면에 식물재료를 이용하여 녹화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경관을 시각적으로 순화시킨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 4) 특히, 지표와 가까운 구조물은 녹화가 용이하므로 우선적으로 녹화한다.
- 5) 기존에 설치된 민간소유의 벽면 구조물은 지자체에서 녹화방법을 제시하고 보조기구 및 식물재료 등 녹화용재료를 무상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

사. 가로변 녹지대 조성

- 1) 가로변의 유희공지나 도시구조물 등을 녹화하여 녹음을 보장하고 바닥포장과 가로시설물이 일체화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가로환경을 조성한다.
- 2) 가로변 녹지대 및 생활주변 녹지대에 꽃과 열매가 있는 유실수와 향토수종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기존 녹지대 등에도 향토수종을 추가 식재하고 신설 녹지대에는 향토수종의 꽃동산을 조성하도록 한다.
- 3) 도로여건상 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열 가로수를 식재하고 가로수 아래 관목류를 식재한 복층화를 통해 가로공간의 녹지율을 높인다.
- 4) 중앙분리대 등 기존 녹지대를 복층으로 식재하며 가로변 녹지대 및 가로수 밑의 보도면 일정구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화목류(철쭉류 등) 및 향토수종 등을 집중적으로 식재한다.
- 5) 건축선 후퇴로 인한 전면부 공지부분에 불법주차를 억제하며 상습주차위반구역은 대지 경계선상에 주차억제용 볼라드를 설치한다.
- 6) 차량위주로 되어 있는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행자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푸르름과 그늘이 있어 주민이 걷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보행자 중심의 녹화거리를 조성한다.
- 7) 교차로변의 공지에는 교통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목이나 수경을 설치하여 물과 나무가 어우러지는 푸르름과 윤택함이 있는 가로환경으로 조성한다.
- 8) 교차로부근은 일반적으로 보행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필요하므로 수경을 조성하여 시각적 볼거리로 제공한다.

아. 비포장확대 및 투수성 포장

- 1)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주차장, 공원, 휴게공간 등은 투수성 포장공법 등을 적용하여 우수침투율을 극대화되도록 한다.
- 2)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3) 우수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는 우수침투 및 저장공간을 조성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별표 2]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제9조 관련)

1. 녹화의 목표 및 조성기준

가. 녹화의 목표

- 1) 사유지 녹화는 주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유형별로 목표를 알기 쉽게 설정하도록 한다.

나. 조성기준

- 1) 유형별로 녹화사업기법을 기술하면서 특히 사업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지도내용 및 조성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공개공지나 유희공지의 녹화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다. 시민의 참가, 협력 등

- 1) 주민, 기업 등 민간의 도시녹화에 대한 참가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을 기술한다.
- 2) 지역의 도시녹화기금이나 공원협회, 녹지관리기구 등의 도시녹화 관계 단체의 육성, 협력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 3) 주민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보급활동과 표창 등의 시행

- 1) 녹화특성과 주민의 활동상황을 근거로 하여 기념식수, 홍보활동의 강화, 녹화경연대회 개최, 교육활동의 강화, 녹지의 날 및 월간 녹지의 달 제정, 녹화행사의 개최, 도·시·군의 나무와 꽃의 제정, 주민참가에 의한 녹화운동의 추진, 녹지의 애착을 높이기 위한 운동의 추진 등 주민의 녹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보급활동의 방법을 제안한다.
- 2) 표창 등 제도의 추진도 다양하게 시도한다.

2. 사유지 유형별 녹화기준

가. 공업지 녹화

- 1) 도시경관 개선의 측면에서 이전이 어려운 공장지를 녹화하고 아울러 공장 주변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오염발생시설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

나. 상업업무지 녹화

- 1)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및 대형건물은 도시의 중심부에 주로 위치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상업지를 녹화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 2) 건축물 옥상녹화: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부의 건축물 옥상을 녹화함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함은 물론 자연과 쉽게 접할 수 없는 도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도시녹지 공간을 확충할 수 있다.

- 3) 대형건물 진입부 주변 녹화: 공공기관과 관공서의 전면부는 기관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곳이고, 상업 및 업무지역의 출입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이와 같은 대형건물의 진입부 및 주변 공간을 녹화하는 것은 도시의 녹화 측면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 4) 신축건물의 공개공지 확보 및 녹화: 신축건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공개공지로 제공하면 용적율 등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를 통하여 도심의 오픈스페이스를 다각도로 확보하고 이를 녹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경관의 개선 및 쾌적성 향상을 도모한다.

다. 주택지 녹화

- 1) 도시인구의 증가로 고밀화된 도심지 주거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주거지 녹화사업을 시행한다.
- 2) 사업추진은 주민 스스로가 조성·관리하며, 시장은 수목을 지원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주도의 녹화가 되도록 한다.
- 3) 주거지 녹화사업을 통하여 실질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역의 쾌적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주민의 정서를 함양시키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4) 골목가꾸기: 녹지확보가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주택단지의 출입구 및 창문에 화분 등을 내어 놓음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킨다. 시장은 가꾸어진 사례를 포상하는 제도 등을 통해 사업을 장려한다.
- 5) 담장 및 벽면녹화: 주거지역 내의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여름철 복사열을 완화시키고, 블록 담장을 투시형으로 교체가능한 지역은 수목을 식재하여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높인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별표 3]

녹화계약서(제31조제1항 관련)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하고, 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OO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OO시 OO읍·면·동 OO번지 외 OO필지 OOOO m^2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계약의 기간은 OOOO년 OO월 OO일부터 OOOO년 OO월 OO일까지 OO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따른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토지 등의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정되고 질서있는 환경이 되도록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필요한 부분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 주택별로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O그루 이상, 관목 O그루 이상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3. 계절감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도로 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고 제1호에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4.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제7조(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 벌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에는 가정에서 사용한 잉여수를 이용하여 관수하는 등 관리에 노력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
2. -----.
3. -----.

제9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 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0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여,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제11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2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해당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게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게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OO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사 천 시 장 (인)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별표 4]

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45조 관련)

| 점 용 대 상 | 점 용 요 율 |
|---|--|
|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 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
|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 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관개용 수로(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 면 제 |
|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 면 제 |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온실 등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 건축물의 설치 | 면 제 |
|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 면 제 |
|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 공작물의 설치 | 면 제 |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 점 용 대 상 | 점 용 요 율 |
|--|--|
|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 면 제 |
|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
|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 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
|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 18. 광고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 (다만, 교외지대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상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할 수 있다.) |
| 19. 상시 영리 행위 ○ 매점 및 건물의 부지 |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다만, 교외지대 공원에 대하여는 인근 상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할 수 있다.) |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점용면적 산출기준

1. 점용면적 산출은 지하, 지상물을 불구하고 평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매설관의 직경(외경)으로 한다.
3. 동일장소에서 다수의 관로 매설시는 전체관으로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4.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시설 등과 관련한 맨홀의 경우는 맨홀에 설치된 시설물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맨홀의 평면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별표 5]

식물 훼손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43조제3항 관련)

| | |
|------------------|---|
| 피해 발생의 경우 | <p>1. 벌목, 수간 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p> <p>2. 과도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나무비용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과도한 가지 훼손: 수관의 2/3 이상 훼손</p> <p>3. 경미한 가지 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p> |
| 피해 이외의 원인 발생의 경우 | <p>1.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를 위반할 때는 “피해 발생의 경우”의 산정기준을 적용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p> <p>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 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p> |
| 비고 | <p>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p> <p>2. 나무 비용: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p> <p>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동안 예치</p> <p>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받은 담보금을 환불</p> |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관 련 법 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11조(도시녹화계획)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그가 관할하는 도시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녹화에 관한 계획(이하 “도시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시녹화계획에는 「산림기본법」제18조에 따라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을 반영되어야 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6조제4항과 제19조제5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녹지활용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식생 또는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그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지활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제13조(녹화계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일정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수림대(樹林帶) 등의 보호
2. 해당 지역의 면적 대비 식생 비율의 증가
3.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식생의 증대

②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 ①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공원조성계획 및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시·군도시공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00호

- ③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부위원장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 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⑤ 시·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군도시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 1.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
- 2. 제10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31.>

-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2조의 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